

#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51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2. 2. .  
제출자 : 충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충주시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을 위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, 민간중심 시민운동 추진, 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제안 (안 제2조)
- 나. 협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, 학계·경제계, 문화계·언론계, 지역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안 제3조과 제4조)
- 다. 위원이 장기치료, 국외 장기체류와 시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다. (안 제6조)
- 라. 협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- 나. 입법예고(2012. 1. 9 ~ 1. 30)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

##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주시민 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한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와 기능)** ① 충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 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한 충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조언하고 시책을 발굴 제안하는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과 행사 개최
2. 시민화합을 위한 민간중심 시민운동 추진
3.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소통의 활성화
4. 시정의 제도개선이나 시민 불편사항 개선
5. 그 밖에 시장이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시책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원
2. 학계·경제계·문화계·언론계 등의 전문가
3. 지역원로와 사회단체 대표

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
2. 시의원과 사회단체 대표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
3.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할 때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.
  1. 의장이 협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3. 시장이 개최를 요청할 때
-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.

- ② 간사는 충주시 충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담당이 된다.
-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갖춰 놓고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분과위원회)**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관계 기관 협조요청 등)**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나 조사·연구 의뢰
2.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
3. 관계 기관·단체 등의 참여와 소속 공무원이나 회원의 지원
4. 공청회, 설문조사,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

**제11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수당 등)**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「충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**부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유효기간)**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 관 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